

영등포구의회
제 1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88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개편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제7조)
-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신설(안 제8조)
- 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3 ~ 9. 23(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 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민간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2015. 7.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1)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음.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사회 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사회복지법인이사의 추천사항 등이 추가되고 구성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함.
- 3) 실무협의체의 참여 범위가 보건, 복지에서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로 영역을 확대하고 구성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함.
- 4)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가하고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분과 설치 규정을 마련함.
-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지역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적·물적·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3.1.27.]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7항

말한다.[본조신설 2014.2.5.][별표 1의3] <개정 2014.11.19.>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

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